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여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자체(분당구, 과주시 등)에서 어린이집 긴급 지원을 시행('20.4월)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은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중복 지원 허용(안 제59조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토록 예외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 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 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u>